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61

발의연월일: 2022. 5. 19.

발 의 자:김상훈·박대출·정우택

송석준 · 김선교 · 하영제

지성호 · 송언석 · 배준영

태영호 · 강대식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 산금을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 2항 및 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③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교통유발부담금을 결정·부 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① -----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 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아 니하면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 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 -----. <후단 삭제> 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하 여야 한다. <신_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 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 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 을 징수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 <신 설> 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 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 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 ② ~ ④ (생 략)

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u>④</u> ~ <u>⑥</u>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